

의안 번호	제3718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근거 조항 반영(안 제1조)
- 나. 교육경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다.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 방법 등 명시(안 제12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